사전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

2023.9.21.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

퇴직연금감독규정 (개정)

Ⅰ │ 신청사유 (자산운용과, 2023.9.20.)

- (개정내용) 非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도 금리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며,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고유식별 정보 처리기관으로 한국예탁결제원, 금융결제원, 상품제공기관 규정
- (신청사항) 금리 공시가 의무화되지 않을 경우 과당 경쟁, 연말 퇴직연금 자금이동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 야기 우려 등에 따라 , 행정예고기간을 15일로 단축할 필요
 -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**금리 공시 규정**은 **한차례 예고***를 거쳐 **별도 의견 없었고**,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**시행령 입법 예고**시 제개정이유서를 통해 세부 개정내용이 **공개**되었음을 고려할 필요
 - *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-152호(예고 기간 '23.6.2~7.2) →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 에서 동 조문에 대한 일부 수정 후 재입법예고하기로 협의

2 검토 내용

- 이미 행정예고를 거친 내용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단순집행을 위한 것 등으로 신속한 규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사전예고기간 단축**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
 - ※「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」제20조등에 따라 **금융위 규정변경은 40일** 이상 사전예고가 원칙이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, 생략·단축도 가능(동 규정 제20조제3항)

3 처리 의견

○ **사전예고 기간** : '23.9.22일 ~ 10.4일(12일간)